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농업법)이 지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되어 오는 2024년 7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 외에도 시·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스마트농업법의 제정 목적이 ‘농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 등을 촉진’ 하는데 초점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 농업 관련 산업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속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주요 내용과 공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도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범위의 규정, ▶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